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42
----------	-------

발의연월일 : 2025. 6. 27.

발 의 자 : 민형배 · 이개호 · 안도걸
주철현 · 김동아 · 박지원
최혁진 · 위성곤 · 양부남
김문수 · 정동영 · 소병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 제정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의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 목적은 형사처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 법의 초점이 ‘예방’이 아닌 ‘처벌’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비취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기업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에,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법의 취

지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의 예방과 사후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명 및 제2조의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처벌”을 “예방”으로 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대재해와 관련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아목 중 “처벌”을 “예방”으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8호 중 “처벌”을 “예방”으로 한다.

③ 향만안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처벌”을 각각 “예방”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중대재해 <u>처벌</u> 등에 관한 법률 <u><신 설></u>	중대재해 <u>예방</u>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 <u>대재해와 관련된 형사처벌과</u> <u>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다</u> <u>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u> <u>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u> <u>정하는 바에 따른다.</u>